

## 5. 지성자본(Intellectual Capital)의 형성을 촉발하는 지식 재산권 보호

### 가.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제약하는 각종법령의 개정 및 규제의 철폐

#### [과제 1]

특허재판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특허법원을 활성화하고 변리사소송제도를 확립

우리나라의 법 정의는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 법체제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47개국중 45위이고 입법활동이 자유경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도 세계 44위이다. 법률서비스는 경쟁국 중 최하위이며 특허법원은 당사자간 침해소송을 못하는 반쪽만의 법원이다. 특허소송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행사해 소송비용이 증가한다. 특허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고 기술재판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변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자.

(1) 특허법원의 특수성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제도개선 우선 관련 국가경쟁력 현위치를 살펴보겠다.

항 목	한국	1위	2위	3위	4위	5위
7.25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도*	27위 6.914	독일 9.153	스위스 8.980	오스트리아 8.933	호주 8.887	네덜란드 8.840
3.27 법과 제도의 틀이 당신 나라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	45위 3.05	싱가폴 8.64	홍콩 8.56	핀란드 8.53	캐나다 8.49	뉴질랜드 8.20
3.28 의회의 입법활동이 경제의 경쟁력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	40위 3.87	싱가폴 8.48	핀란드 7.45	아일랜드 7.07	룩셈부르크 7.00	아이슬랜드 6.69
3.43 경쟁법이 당신 나라의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는 정도*	27위 5.44	독일 7.53	핀란드 7.42	덴마크 7.27	뉴질랜드 6.96	캐나다 6.91
3.45 개인적 안전과 사유재산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정도*	33위 5.63	오스트리아 9.23	싱가폴 9.22	홍콩 8.75	캐나다 8.69	덴마크 8.61

\* 표시는 설문항목으로, 동항목의 지표는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항목별 설문결과의 평균임  
현재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 품질은 최하위 수준이고 특허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반쪽 역할만 하고 있다. 1998. 3. 1 개원한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쟁송에 관한 전문법원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심결(審決)취소소송만 취급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재판관할을 달리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권리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IMD 가  
1997-2000  
가 가

	2000 7-22. ( '96-'97 ) ( )		1999 7-22. ( '92-'96 ) ( )		1998 7-16. ( '94-'95 ) ( )		1997 7-16. ( '94-'95 ) ( )	
	102	35	211	31	112	34	112	34
	991	17	994	16	874	18	874	18
	2238	9	1418	13	1168	15	1168	15
	393	23	281	28	319	30	319	30
	304	31	219	30	182	32	182	32
	19481	4	20064	3	16640	5	13278	6
	384	25	360	26	403	27	403	27
	19646	3	19749	4	20247	3	20247	4
	15	45	15	43	18459	4	21306	3
	84	36	42	36	18	43	18	43
	26	40	25	39	25	40	25	40
	114	33	132	32	218	31	218	31
	61406	2	58422	2	55903	2	55903	2
	319	30	38	37	167	33	167	33
	983	18	943	17	820	19	820	19
	357	26	357	27	472	25	472	25
	1886	11	1630	10	1836	11	1836	11
	2004	10	2231	9	2356	10	2355	10
	940	19	666	20	626	21	626	21
	244	32	127	33	.	.	.	.
가	112	34	23	40	15	44	5	44
	321	29	280	29	334	29	334	29
	3	47	2	47	2	45	2	45
	485	21	509	21	499	23	499	23
	4436	8	4782	7	5232	8	5232	8
	1311	13	1404	14	1468	14	1468	14
	454	22	379	25	360	28	360	28
	4551	7	4476	8	3040	9	3040	9
	387	24	387	24	432	26	432	26
	8	46	8	46	.	46	.	46
	158809	1	141243	1	83781	1	83781	1
	1458	12	1457	12	1595	13	1595	13
	354	27	492	22	498	24	498	24
	22	44	22	41	21	42	24	41
	679	20	726	19	798	20	798	20
	66	37	66	34	91	35	91	35
	23	43	9	45	77	36	77	36
	27	39	51	35	56	37	56	37
	1292	14	1512	11	1722	12	1722	12
	23	42	21	42	36	39	36	39
	12597	5	13630	5	14437	6	14437	5
	1024	15	909	18	898	17	898	17
	24	41	12	44	39	38	39	38
	1409	6	7448	6	6175	7	6175	7
가	349	28	443	23	535	22	535	22
	991	16	1039	15	1167	16	1167	16
	27	38	34	38	21	41	21	42

### ① 특허소송의 특수성 인정

첫째, 특허소송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허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과학기술과 법률적인 문제가 접목된 특수한 영역으로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다루는 기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를 판단하는데는 전문적 기술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소송은 기술 및 소송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재판과 대리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특허소송절차의 비효율 제거

둘째, 특허소송절차의 비효율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변리사의 관여가 배제(변리사법에서는 대리권이 있으나 일반법원에서 대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음)되고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는 변호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변리사를 선임하게 되어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이 증가한다.

### ③ 특허재판을 전문가에 맡겨 신속처리

셋째, 특허재판의 적정·신속한 진행이 지연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은 기술이므로 사실심리과정에서 변호사의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재판부에 소송당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설명, 준비절차나 변론을 통한 기술적인 사실에 대해 판사에게 설명하고자 하여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그 폐해는 재판부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에게 큰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2) 특허법원을 활성화하고 변리사 소송제도를 확립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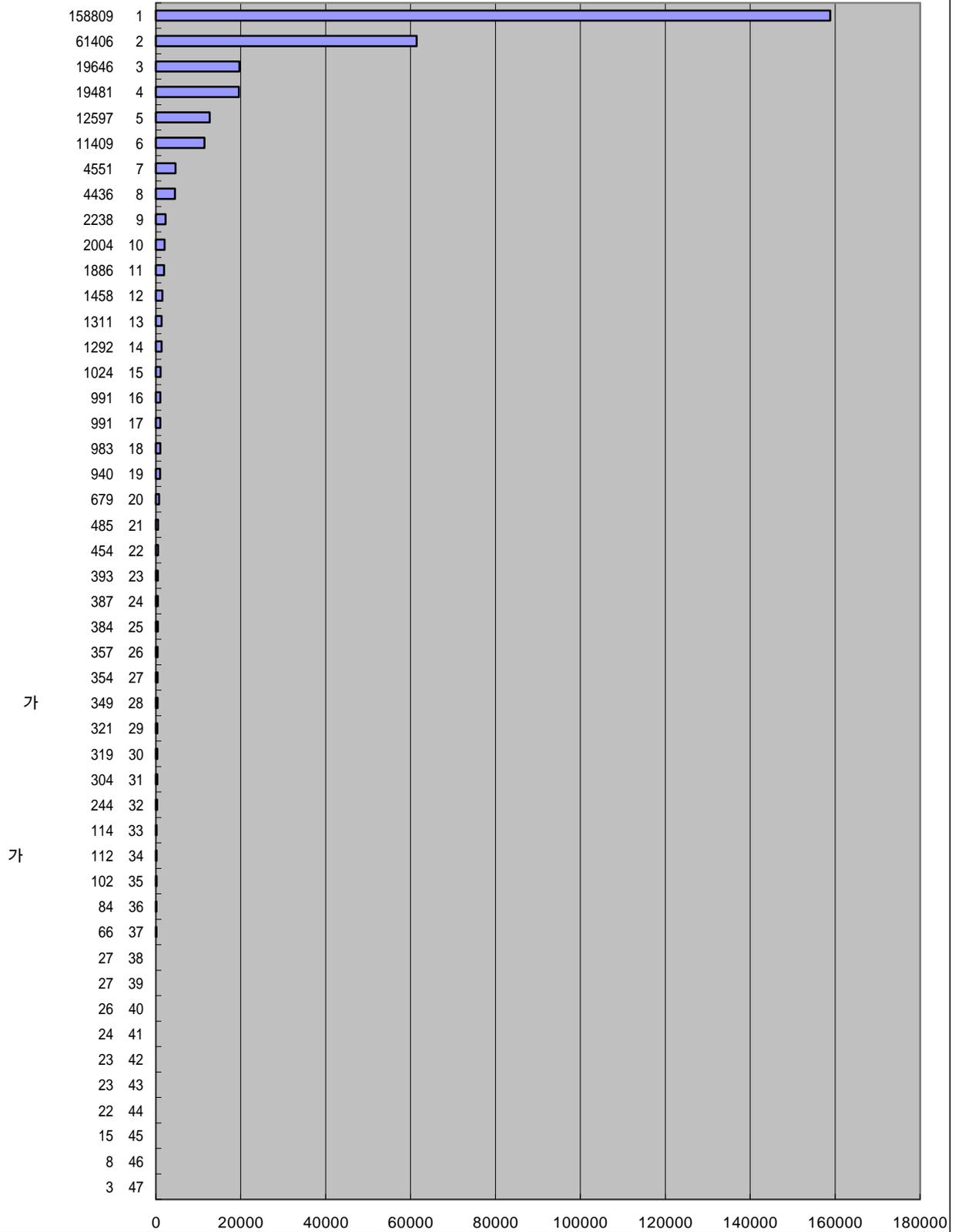
### 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첫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법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5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 종자산업법 제105조가 정하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변리사의 특허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특허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대리권에 관한 관련법률의 개정은 관련부처 및 관련자와 상의하여 추진하고 소송당사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은 소송당사자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 IMD 2000 가 가

## 7-22. ( '96-'97)( )



## ② 신지식소유권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도 관할

둘째, 신지식 소유권에 관한 소송도 특허법원에서 관할해야 한다. 현재 신지식 소유권(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 저작권)에 관한 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재판관할을 특허법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 ③ 특허소송의 운영체계를 일원되게 일원화

셋째, 기형적인 특허소송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결취소 소송과 침해소송이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기형적인 운영체계는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법조계가 특허 소송관할의 일원화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자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양 소송을 특허법원으로의 관할확대가 시급하다.

## ④ 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신속한 재판처리

네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특허취소 심결소송의 경우 법원장 이외에 3개의 재판부에 총 9명의 판사와 특허청에서 파견된 9명의 기술심리관 및 법원 행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⑤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

다섯째, 특허법원 관할확대를 위한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특허법원의 소송관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 대다수가 특허법원의 관할확대를 찬성하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 관할확대를 추진한다.

## ⑥ 특허분야 전문성 제고 노력

마지막으로 특허 분야의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1C 첨단기술개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법원과 법률대리인의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과 신지식재산권(컴퓨터소프트웨어·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저작권) 분야의 등록 및 관리 감독 관청을 특허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한 국가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과제 2]

### 올바른 법제도의 안착화를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

민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제 88조 및 변리사의 소



송대리권 조항을 축소하는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국민(발명가)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헌법 제 28조 및 제 22조를 각각 위반한 위헌적 조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의 가장 중요한 법제도의 정비는 인적재원의 양성의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제88조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한 부칙 제9조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가 삭제되어야만 국민의 권익보호와 발명기술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발명가들에 대한 올바른 환경의 조성이 가능해진다.

IMD 가

2000

가 가

7-23.

가

('93-'97)( 가 )

